지자체 회복력 (resilience) 과 규제혁신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이 기 영

목차

- 1. 지자체 회복력과 기후변화
- 2. E-mobility 와 규제혁신
- 3. 시사점

지방규제혁신과

• 지자체가 제기하는 국가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의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정비('15.1월 신설)

업무

- 1.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 및 정비
-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련 소극적 행태 개선
-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경쟁 규제개혁 체계 구축
- 4.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지원
- 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평가
- 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유공자 발굴 및 시상
- 7.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관리
- 8. 지방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
- 9.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10.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수립 및 지원

성과

256건 협의, 96건 수용('17년)→781건 협의, 264건 수용('18년) →1,127건 협의, 435건 수용('19년) →1,270건 협의, 386건 수용('20년) →735건 협의, 162건 수용 중('21년 8월)

'21년

원활한 지역균형뉴딜추진 공기업 규제, 자치법규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자치법규 활성화 자치단체 규제혁신 기반조성

지자체 규제애로 공론화

지방규제혁신과

• 규제와 규제개혁

규제

정부가 국민의 생활영역에 개입하여 무엇을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

법적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가, 수익을 주는가'가 판단기준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가,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가' 가 판단의 기준

관련 연구 • 잠정적 입법(temporary legislation), 단계적 입법(step by step legislation), 행정재량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이 신산업 규제 방식(박균성, 2018)

- 포지티브 형식의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가기 어려워 비공식적 채널 필요(이수형, 2020)
- 진입규제가 반드시 산업의 혁신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개별적 입법을 통한 규제혁신이 신산업 육성에 효과적인 경우 존재(김태호, 2017)

■ 출처: 네팔의 친환경 이동수단과 관련한 규제체계 연구(규제연구 29(1) 이기영 외)

지방규제혁신과

파이낸설 뉴^^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028면

아동수당 신청, 관할 지자체 방문안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 61건 개선 보훈수당, 전출입 신고 안해도 받아 자유무역지역에 농산물가공업 입주 굴껍테기, 제철소 석회석으로 허용

앞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주소지 관할 지 안 방안을 마련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을 자체에 방문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 어디 개정해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

불편 등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 과 지역 경제·만생현장 규제혁신 주요 과제

우선 경제현장에 있던 규제 결립을 해 소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됨 제조가공업 입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국 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할 방지를 위한 보

"대도시 자하철 점포시설에 대해 일관되 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 리 사각지대를 없어는 계기를 마련한 것"

보훈수당 수급자도 전출입시 별도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통합 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 템을 연계, 보존수당 지급 제도를 개선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001

울산광역매일

울산앞바다 동해가스전 인공구조물 재활용

철거비용 1천억 이상 절감·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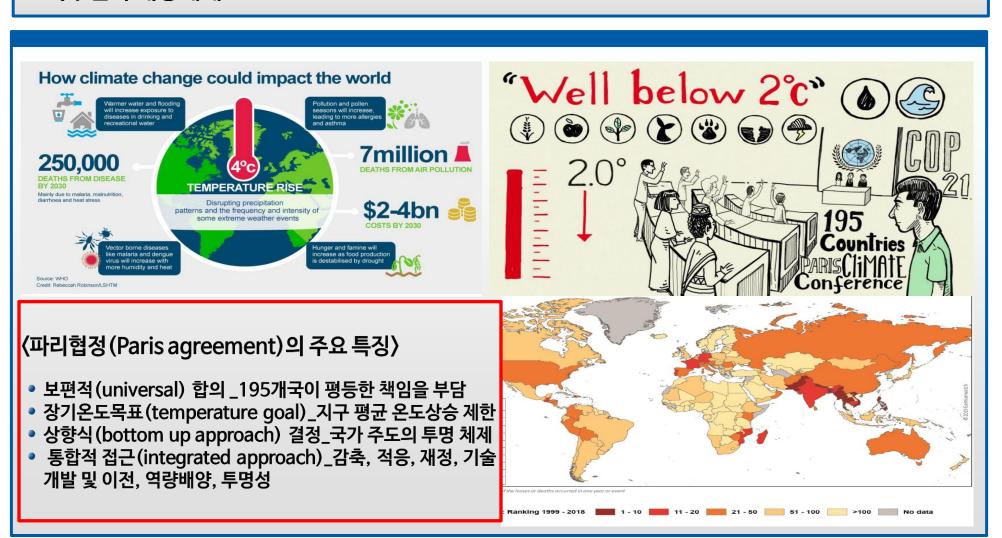
용이 허용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1







• 기후변화 대응체제



■ 출처: 국제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이해(오채운, 발표자료, 2020)

•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_LEDS(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LEDS 제출국(21.8 기준, 17개국)>



- 2020.3. 제출_배출량 3,300만톤
-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 그린 수송 지원



- 2019.6. 제출_13년 대비 80% 감축
- 전력 및 연료 제조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 ▶ 2018.4. 제출_90년 대비 80% 감축
- ▶ 녹색투자기금 활성화, 에너지 생산성 제고



- - 2016.12. 제출_90년 대비 75% 감축
 - 순환경제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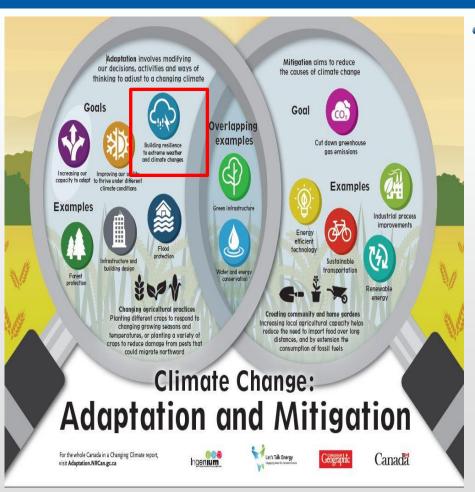


- 2016.11. 제출_90년 대비 80~95% 감축
- 재생에너지 촉진, 정보공유 확대



- 2016.11. 제출_05년 대비 80% 감축
- 에너지 탈탄소화, 산림면적 증대

지자체 회복력 (resilience)



- The ability of households, communities and nations to absorb and recover from shocks, whilst positively adapting and transforming their structures and means for living in the face of long-term stresses, change and uncertainty. (OECD, 2015)
 - 전체적으로 예상된 형태의 사건을 교란시키는 중요한 변화에 장기간에 걸쳐 후퇴하지 않도록 생산적으로 대응하는 근본적인 특성(Home and Orr, 1988)
 - 변화하는 환경에서 외부충격을 견디고 흡수하며 혼란을 완화시키는 능력(UN ESCAP, 2013)

대상 충격으로부터 위험과 교란을 줄이면서 스트레스로 부터 빨리 바운스백하고 안정된 균형으로 복귀하는 능력

시스템 기능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충격으로부터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혼란을 완화시키는 능력

>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조직 및 변화하고 위기영향을 흡수하여 시스템의 핵심적 목적을 유지

•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 출처: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관계부처합동, 2021)

•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 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 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남 영양군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농업

- 축산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재해

- 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 재난대응 예+경보체계 강화

건강

- 의료지원시설 보강 및 확충
-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물관리

-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 취약지역 식수공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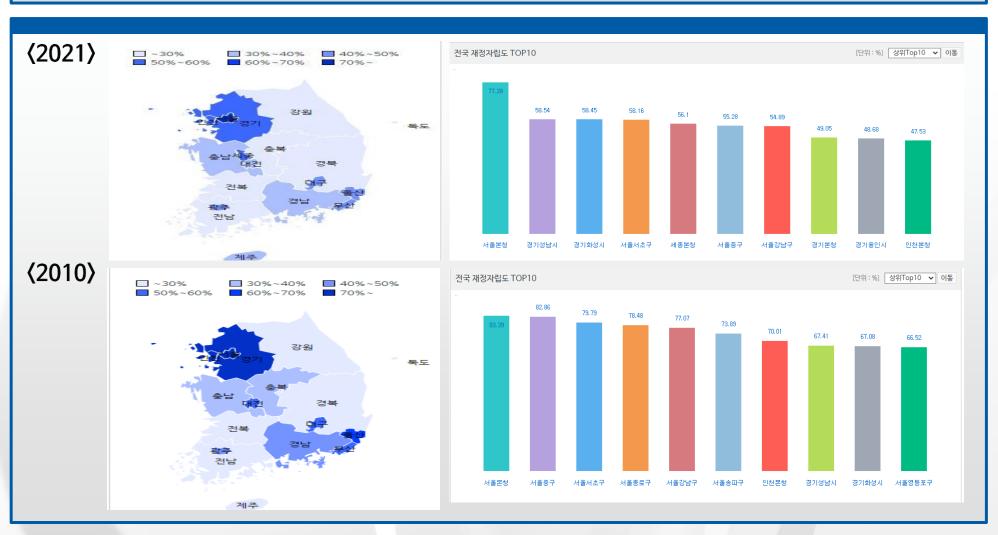
산림

- 산림자원 육성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

생태계

-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사업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지자체 재정자립도



■ 출처: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 광역자치단체 고탄소업종 기업 편차

	사업체 수 (천 개)	종사자 수 (천 명)	부가가치 (조원)		사업체 수 (천 개)	종사자 수 (천 명)	부가가치 (조원)
서울	4.1	104	14.7	강원	1.1	43	6.4
인천	4.6	172	22.0	충북	3.2	177	35.4
경기	24.9	915	190.1	충남	4.3	252	63.6
부산	4.2	134	15.1	전북	1.8	85	12.9
대구	3.3	103	11.1	전남	1.8	94	31.6
광주	1.3	64	10.2	경북	5.2	240	45.9
대전	0.9	42	7.0	경남	6.9	318	46.0
울산	1.8	171	41.7	제주	0.2	5	0.7

[■] 출처: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21.8.23.)



Taskforce on Innovation, Growth and Regulatory Reform

Rt Hon Sir Iain Duncan Smith MP
Rt Hon Theresa Villiers MP
George Freeman MP
May 2021

 Regulations can be both an unnecessary barrier to growth for many business and a catalyst for investment in new sectors.
 Bad regulation is ineffective, expensive and difficult to implement. Good regulation can be a vital part of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growth.

- Boosting Productivity, Encouraging competition and stimulating innovation_ Proportionate, Forward looking, Outcome focused, Collaborative, Experimental, Responsive.
- Energy_a massive change in regulatory framework for energy to deliver the smart energy grid.
- Transport_place_based test beds for agile regulation, setting standards and collecting interoperable data across modes for evidence and data based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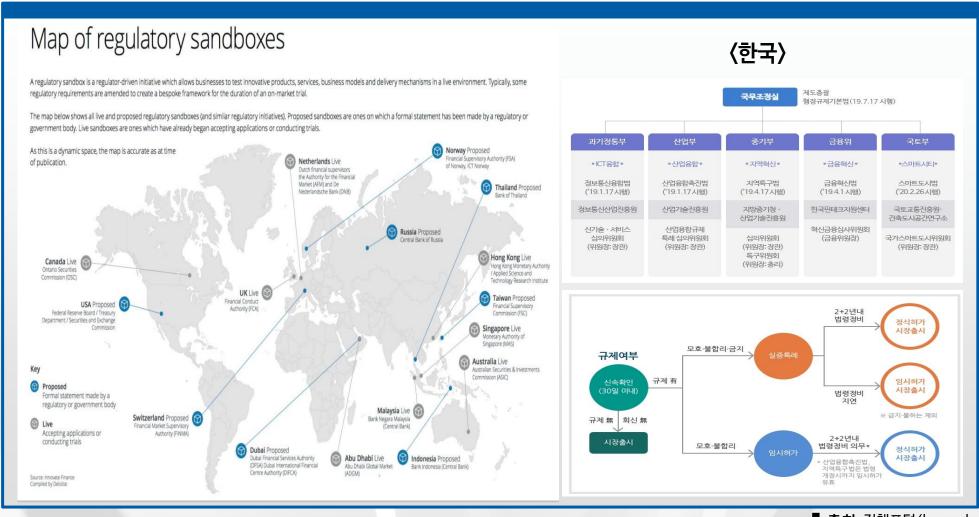
Proposal 8.2

 Create Clear consistent technical and regulatory standards for "energy smart" appliances to support their roll out-creating a more stable energy network in response to growing demands for en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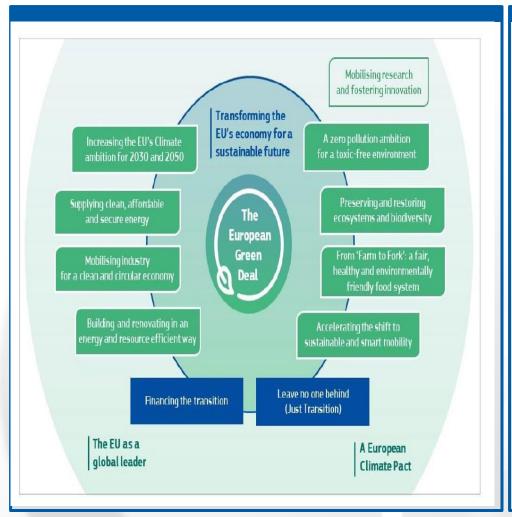
Proposal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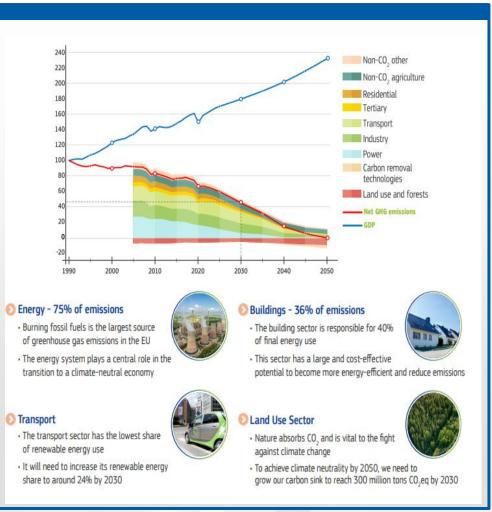
 Reform the current UK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energy generation and distribution to match the governments ambitions for green growth and Net zero.

• 신산업(new industry)의 육성과 규제



• 유럽 그린딜





• 주요국의 E-mobility 정책방향





 연료효율 증대, 저탄소 연료 및 교통수단 개발, 자동차 운행거리 축소_선진적 전기차 기술개발 강조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 관용차 300 만대 교체, 정책금융 지원 등





- 신차 판매비중의 70% 전기차 점유 목표, 일본주도의 전략적 국제표준화, 지자체 밀접연결 추진
- 신에너지 산업 종합개발기구(NEDO)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 충전 인프라 정비 촉진산업기금 마련

• 주요국의 E-mobility 정책방향



- 15년 6월 이모빌리티 국가 플랫폼(National Platform for Electric Mobility)발족
- 전기자동차 600만대 보급 및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중단
- EV 시범지역 선정 및 실증사업 실시
- 현장 테스트 지원 및 배터리 재활용 연구사업 등 실시



- 15년 6월 이모빌리티 국가 플랫폼(National Platform for Electric Mobility)발족
- 전기자동차 600만대 보급 및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중단
- EV 시범지역 선정 및 실증사업 실시
- 현장 테스트 지원 및 배터리 재활용 연구사업 등 실시

• 한국 그린뉴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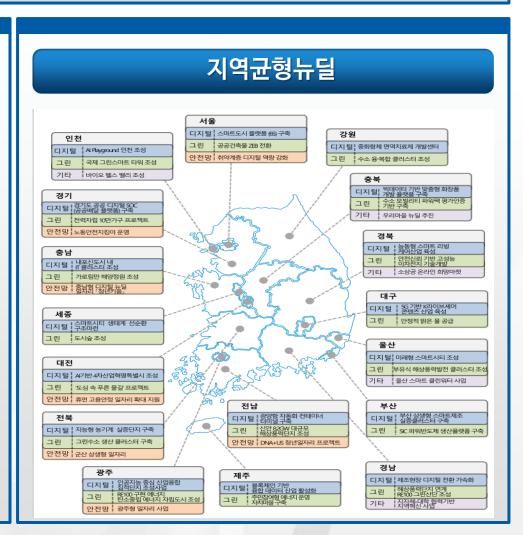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메타 버스 등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사람투자
- 고용사회 안전망
- 청년정책
- 격차해소



• E-mobility 규제혁신

•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21.2.25)

< 미래차(모빌리티) 분야 세부 추진과제(9건) >

- 친환경차 안전성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①전기.수소차 등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기준 마련
- 미래차 보급기반 확대를 위해 ^②수소차 충전허용 압력 확대 및 ^③도심내 공원 체육시설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 자율주행차 상용화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④자율주행차 시범운행 특례부여 및 ^⑤사고조사체계 구축
- 사용후 배터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잔존가치 안전성 평가체계 마련
- 초소형 전기차시장 확대를 위한 ^⑦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
-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 위한 ^⑨기술 개발・고도화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5개 세부사업, 9개 규제특례>

세부사업 명	실증특례(①~⑨) 주요내용	실증시기
①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①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20.5.27
②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②스로틀방식 전기지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③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③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④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⑤PM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 ⑥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20.6.30
④4륜형 전기차 주행 실증	⑦물품적재장치 설치한 4 <u>륜형 전기차</u> 주행 허용	
⑤농앱용 동력완반차 주행 실증	 ⑧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 kg 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허용 ⑨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3시간 25km→2시간 이상, 17km이상) 허용 	'20.12월 예정

■ 출처: 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21.3.31) 산업한국판 뉴딜 2.0 향후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21.7.22.)

• 지역균형뉴딜 규제혁신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환경 개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요건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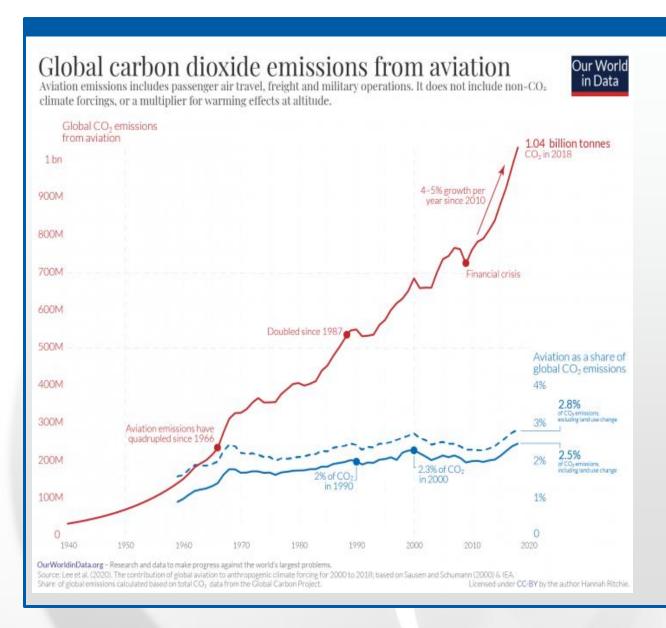
전기추진 선박의 배터리 시스템 개선

지역중심 온실가스 관리강화

수소충전소 설치 시 지역제한 입찰기준 확대 수소차 운전자 의무안전교육 개선 도시공원 내 수소충전소 입지허용

에너지 다소비업자 관리강화

3. 시사점



감사합니다